



2010 규정심의회 대의원 선출 방법

RI의 입법기구인 규정심의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됩니다. 규정심의회는 RI의 정관 문서들을 개정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모든 지구는 의결권을 행사할 지구 대의원을 선출하여, 1주일간 개최되는 규정심의회에 파견해야 합니다. 다음 규정심의회는 2010년 4월,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의원 선출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은 심의회 개최 연도 2년 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 규정심의회 대의원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선출되어야 합니다.

지구총재는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선출한 직후, 규정심의회 대의원 증명서를 통해, 이를 RI에 보고해야 합니다. 3페이지로 되어 있는 규정심의회 대의원 증명서의 첫 페이지를 미국 일리노이 주, 에반스톤에 소재한 RI 세계본부 규정심의회 부서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RI 세칙, 제 8.080.1.항). 완전히 작성된 대의원 증명서를 세계본부로 팩스하셔도 됩니다. 제 2페이지와 3페이지는 각각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에게 주어 규정심의회 개최지에 도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교체대의원은 대의원이 규정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대의원으로 봉사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대의원 자격 (RI 세칙, 제 8.020.항)

규정심의회 대의원 후보자는

- ✓ 선출 당시, 지구총재로서 임기를 만료한 회원;
- ✓ 대의원 자격, 임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 회원;
- ✓ 대의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임무와 책임을 수용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회원; 그리고
- ✓ 규정심의회 전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합니다.

외국어 구사 능력: 자격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후보자가 규정심의회에서 사용, 또는 통역되는 언어들 중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0 규정심의회는 한국어를 비롯, 6개 국어로 동시통역될 예정입니다.

- | | |
|--------|---------|
| ✓ 영어 | ✓ 포르투갈어 |
| ✓ 불어 | ✓ 일어 |
| ✓ 스페인어 | ✓ 한국어 |

대부분의 심의회 자료들도 상기 언어들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규정심의회 개최 연도에는 입법안 책자를 비롯, 읽어야 할 많은 자료들이 대의원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재선출 규정: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입법 절차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규정심의회 경험이 있는 그룹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모두를 고려하여 대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경우에 따라, 지구 대의원으로 봉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전 총재가 없거나 또는 단 1 명이 후보자로 나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단일 후보자(RI 세칙, 제 8.060.4.항): 대의원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단 1 명 밖에 없을 경우에는 투표할 필요가 없으며, 그 후보자를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공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당장 교체대의원을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 지구총재가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임명하면 됩니다.

후보자가 없는 경우(RI 세칙, 제 8.020.2.항):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전 총재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차기총재나 현 총재가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총재가 이를 증명하고 또한 RI 회장이 해당 지구에 임기 만료 임원이 없음을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일 경우, RI 한국 지국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대의원 선출 (RI 세칙, 제 8.050., 8.060.1., 8.070., 그리고 13.070.항)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은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은 연차 지구대회(RIBI의 경우 지구 심의회)나 지구 우편투표로 선출됩니다. 우표투표에 의한 선출은 지구대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하였거나 혹은 RI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구 클럽들은 자격을 갖춘 지구 로타리안 1 명을 소속 클럽에 상관없이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클럽회장과 총무가 추천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추천서를 접수한 지구총재는 지구대회 선거를 위해 이를 선거인단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2010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은 2007-08 로타리 연도에 선출되어야 합니다.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 (RI 세칙, 제 8.050.항):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은 RI 세칙 제 13.020.항에 규정된 지구총재 지명 절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 후보는 지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을 채택하지 못했을 경우: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였으나, 위원들을 선발하지 못한 지구는 현재 해당 지구 클럽 회원으로 있으며 위원으로 봉사할 의향이 있는 전 총재들을 지명 위원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대의원 후보자들은 지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RI 세칙, 제 8.060. 및 15.050.항):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지구들은 지구대회(RIBI의 경우 지구 심의회)에서 대의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7-08 지구대회(RIBI의 경우, 2007년 10월 1일 이후에 열리는 지구 심의회)에서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클럽들은 소속 클럽에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지구 로타리안 1 명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클럽회장과 총무가 추천서에 서명하여 지구총재에게 우송하면 됩니다. 추천서를 접수한 지구총재는 지구대회 선거를 위해 이를 선거인단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는 RI 세칙 제 15.050.항에 기술되어 있는 지구대회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각 클럽은 최소한 1 명의 선거인을 지구대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가 25 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 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1 명의 선거인을 추가로 더 보낼 수 있습니다. 클럽 회원 수에 따른 선거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럽 회원 수	선거인 수
37 명까지	1
38 명에서 62 명까지	2
63 명에서 87 명까지	3
88 명에서 112 명까지	4
113 명에서 137 명까지	5
138 명에서 162 명까지	6
163 명에서 187 명까지	7
188 명에서 212 명까지	8

선거인은 반드시 지구대회에 참석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대회가 개최되는 국가 이외의 지역에 있는 클럽들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RI 세칙 제 15.050.3.항 참조). 클럽의 선거인들은 투표 시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에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투표 수의 과반수(50% +1 이상)를 얻은 후보자가 지구 대의원이 되며, 차점자가 교체 대의원이 됩니다.

우편 투표에 의한 선출 (RI 세칙, 제 8.070.항): 경우에 따라, 지구대회(RIBI의 경우 지구 심의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지구대회에서의 결의에 의해 또는 지구총재가 RI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우편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회에서 우편 투표 여부를 결정할 경우, 지구대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선거인의 과반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는 지구대회가 개최된 후, 1 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구총재가 RI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구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RI 한국 지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교체: 규정심의회 대의원은 선출직이므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교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이 사퇴할 경우에만 교체대의원이 대의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교체대의원 역시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없거나, 후보자가 많지 않아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구총재가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총재는 전 지구총재를 (상황에 따라서는 지구총재 자신이나 차기총재도 가능) 지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전 지구총재가 1 명도 없을 경우, 지구총재는 자격을 갖춘 다른 지구 로타리안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의 의무

RI 세칙, 제 8.030.항에 기술되어 있는 규정심의회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클럽의 심의회 입법안 제안 준비를 지원;
- ✓ 지구대회 또는 기타 지구 회합에서 제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토론;
- ✓ 지구 로타리안들의 의견 파악;
- ✓ 규정심의회에 제출된 모든 입법안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규정심의회에 효과적으로 전달;
- ✓ RI의 공정한 입법 제정자로 활동;
- ✓ 규정심의회전 기간 동안 회합에 참석;
- ✓ 규정심의회 폐회 후, 규정심의회 심의 내용을 지구 내 클럽들에게 보고;
- ✓ 차기 심의회에 제안할 지구 클럽들의 입법안 준비를 지원.

규정심의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되므로 관련 업무, 즉 규정심의회 대의원의 업무 사이클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제 1 차 연도(2007-08)	대의원 선출
제 2 차 연도(2008-09)	입법안 제출 (마감일: 2008년 12월 31일)
제 3 차 연도(2009-10)	규정심의회 참석 (2010년 4월 25-30일)

2010 규정심의회 일정

2008년 6월 30일	지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 RI에 보고
2008년 12월 31일	2007 규정심의회 입법안 (에반스톤) 세계본부 제출 마감일
2009년 8월-12월	존 연수회에서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교육 실시 (대의원들은 존 연수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2009년 3월 31일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마감일
2009년 9월 30일	입법안 책자 출판
2010년 2월 25일	입법안에 대한 클럽/지구의 '찬성 및 반대 의견' 세계본부 제출 마감일
2010년 4월 25-30일	2010 규정심의회,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대의원 선출이나 2010 규정심의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주저마시고 RI 규정심의회 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uncil Services
Rotary International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linois 60201
U.S.A.
전화: (847) 866-3302
팩스: (847) 556-2123
E-메일: councilservices@rotary.org